

# 미얀마의 최근 경제개혁과 투자환경 변화 전망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jwcheong@kiep.go.kr](mailto:jwcheong@kiep.go.kr)/[jaewan\\_cheong@yahoo.com](mailto:jaewan_cheong@yahoo.com))

# 주요 내용

**I. 경제 개황 및 특징**

**II. 신정부의 주요 개혁·개방 정책**

**III.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주요국 동향**

**IV. 외국인투자환경과 변화 전망**

# I. 경제 개황 및 특징

## 1-1. 최근 주요 경제 지표 추이

구분(회계연도 기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추정)
GDP (십억 달러) <sup>1)</sup>	12.0	14.7	20.1	28.2	28.2	36.4	54.5
실질GDP성장률(%)	13.6	13.1	5.5	3.6	5.1	5.3	5.5
1인당 GDP(달러) <sup>1)</sup>	258	314	428	596	593	759	1,127
소비자물가상승률(%)	9.4	20.0	32.9	22.5	8.2	7.3	4.2
대출 이자(%)	15.0	17.0	17.0	17.0	17.0	17.0	17.0
예금 이자(%)	10.0	12.0	12.0	12.0	12.0	12.0	12.0
수출(억 달러) <sup>2)</sup>	37.0	45.2	64.5	72.4	71.4	89.8	98.9
수입(억 달러) <sup>2)</sup>	35.8	39.1	55.2	69.4	70.7	81.8	101.3
경상수지(백만 달러, grants 제외)	576	760	89	-920	-947	-365	-1,385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782	1,248	3,054	3,629	4,638	6,070	7,903
외환보유고/월별수입(월)			6.6	6.3	7.9	8.9	9.4
대외채무(십억 달러, 지체금 포함)	6.6	6.8	8.08	9.10	9.97	11.24	11.84
대외채무/GDP(%)			40.0	29.0	28.3	24.8	22.8
연평균 시장환율(짜트/달러) <sup>1)</sup>	1,027	1,150	1,162	1,021	1,147	1,002	778
공식환율(짜트/달러)			5.2	5.8	5.7	5.4	5.2

주: 1) IHS Global Insight(2012. 2).

자료: ADB(2012. 4); IMF(2012. 5).

# I. 경제 개황 및 특징

## 1-2. 미얀마와 동남아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2010년)

구 분	면적	총인구	경상GDP	1인당 GDP		수 출	수 입	대외개방도
	천 km <sup>2</sup>	백만 명	십억 달러	US\$	US\$PPP	십억 달러	십억 달러	%
브루나이	5.8	0.4	13.0	31,239	48,333	9.34	2.47	90.8
인도네시아	1,860.4	234.4	706.7	3,015	4,347	157.78	135.66	41.5
말레이시아	330.3	28.3	238.0	8,423	14,744	198.51	164.29	152.4
필리핀	300.0	94.0	188.7	2,007	3,920	51.43	58.23	58.1
싱가포르	0.7	5.2	222.7	43,117	56,694	351.18	310.39	297.1
태 국	513.1	63.9	318.9	4,992	9,221	193.18	179.30	116.8
캄보디아	181.0	14.3	11.6	814	2,118	5.07	6.78	102.2
라오스	236.8	6.4	6.3	984	2,449	1.75	2.06	60.5
<b>미얀마</b>	<b>676.6</b>	<b>61.2</b>	<b>43.0</b>	<b>702</b>	<b>1,256</b>	<b>8.80</b>	<b>6.37</b>	<b>35.3</b>
베트남	331.1	88.3	103.6	1,174	3,143	72.19	84.80	151.5
<b>ASEAN 10</b>	<b>4,435.7</b>	<b>639.7</b>	<b>1,852.5</b>	<b>3,107</b>	<b>4,859</b>	<b>1,049.23</b>	<b>950.35</b>	<b>107.9</b>

자료: IMF & ADB를 토대로 필자 작성.

# I. 경제 개황 및 특징

## 1-3. 산업구조

<동남아와 아시아 주요국의 분야별 GDP 구성<sup>1)</sup> 비교 (1990~2010년)>

	농업			공업			서비스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캄보디아	55.6	37.9	36.0	11.2	23.0	23.0	33.2	39.1	41.0
라오스	61.2	52.6	30.8	14.5	22.9	27.4	24.3	24.6	41.8
미얀마	57.3	57.2	36.4	10.5	9.7	26.0	32.2	33.1	37.6
베트남	38.7	24.5	22.1	22.7	36.7	41.1	38.6	38.7	38.3
브루나이	1.0	1.0	0.8	61.6	63.7	66.8	37.5	35.3	32.5
인도네시아	19.4	15.6	15.3	39.1	45.9	47.0	41.5	38.5	37.6
말레이시아	15.0	8.3	10.4	41.5	46.8	43.6	43.5	44.9	46.0
필리핀	21.9	15.8	12.3	34.5	32.3	32.6	43.6	52.0	55.1
싱가포르	0.3	0.1	0.0	32.6	33.6	28.3	67.0	66.3	71.7
태국	12.5	9.0	12.4	37.2	42.0	44.7	50.3	49.0	42.9
중국	27.1	15.1	10.2	41.3	45.9	46.8	31.5	39.0	43.0
인도	29.3	23.4	19.0	26.9	26.2	26.3	43.8	50.5	54.7
한국	8.9	4.9	2.6	41.6	40.7	39.3	49.5	54.4	58.2

주: 1) 부가가치를 기초로 작성.

자료: ADB(2011).

부문별 GDP 비중 변화(%)

	2000	2010	CAGR
농림수산업	42.2	37.8	-4
광업	2.4	0.7	4
제조업	10.1	18.8	11
전기, 가스, 물 등	1.1	0.3	23
건설업	4.7	4.5	10
무역	20.9	21.3	-2
수송&통신	6.8	13.9	9
금융	2.1	0.1	-3
공공행정	6.0	0.8	3
기타	3.8	1.7	3

자료: ADB를 토대로 필자 작성.

# I. 경제 개황 및 특징

## 1-4. 외국인직접투자(FDI) 구조

(기준: 2012년 2월까지의 누적 및 허가. 단위: 건, 백만 달러, %)

	건 수	금 액	비 중
전 력	5	18,873.72	46.68
석유&가스	104	13,815.38	34.17
광 업	64	2,794.46	6.91
제조업	164	1,760.70	4.35
호텔&관광	45	1,064.81	2.63
부동산	19	1,056.45	2.61
축&수산업	25	324.36	0.80
수송&통신	16	313.91	0.78
산업단지	3	193.11	0.48
농 업	7	173.10	0.43
건설업	2	37.77	0.09
기타 서비스	6	23.69	0.06
전 체	460	40,431.45	100.00

	건 수	금 액	비 중
중 국	33	13,947.15	34.50
태 국	61	9,568.09	23.66
홍 콩	38	6,308.50	15.60
한 국	49	2,941.29	7.27
영국(버진 아일랜드와 버뮤다 포함)	51	2,650.59	6.28
싱가포르	72	1,804.01	4.46
말레이시아	39	977.46	2.42
프랑스	2	469.00	1.16
미 국	15	243.57	0.60
인도네시아	12	241.50	0.60
네덜란드	5	238.84	0.59
일 본	24	216.22	0.53
인 도	5	189.00	0.47
필리핀	2	146.67	0.36
러시아	2	94.00	0.23
기 타	50	395.56	1.27
전 체	460	40,431.45	100.00

자료: Myanmar Government

# I. 경제 개황 및 특징

## 1-5. 수출입 구조: 국별

	2005년		2010년	
	금액(백만 달러)	비중(%)	금액(백만 달러)	비중(%)
<b>수 출</b>	3,701.6	100.0	6,413.0	100.0
<b>1. Thailand</b>	<b>1,623.0</b>	<b>43.8</b>	<b>2,590.3</b>	<b>40.4</b>
<b>2. India</b>	<b>450.9</b>	<b>12.2</b>	<b>1,198.6</b>	<b>18.7</b>
3. China, People's Rep. of	249.5	6.7	873.6	13.6
4. Japan	184.8	5.0	353.4	5.5
5. Malaysia	121.5	3.3	134.9	2.1
6. Germany	102.2	2.8	71.0	1.1
<b>7. Korea, Rep. of</b>	<b>51.1</b>	<b>1.4</b>	<b>73.2</b>	<b>1.1</b>
8. Singapore	98.5	2.7	74.8	1.2
9. Viet Nam	41.6	1.1	60.7	0.9
10. Bangladesh	29.3	0.8	63.8	1.0
<b>수 입</b>	3,577.7	100.0	9,589.4	100.0
<b>1. China, People's Rep. of</b>	<b>1,028.4</b>	<b>28.7</b>	<b>3,828.8</b>	<b>39.9</b>
2. Thailand	777.3	21.7	2,280.2	23.8
3. Singapore	656.1	18.3	1,271.9	13.3
<b>4. Korea, Rep. of</b>	<b>132.0</b>	<b>3.7</b>	<b>459.1</b>	<b>4.8</b>
5. Malaysia	270.3	7.6	239.0	2.5
6. Indonesia	85.8	2.4	312.6	3.3
7. India	122.5	3.4	234.0	2.4
8. Japan	101.0	2.8	290.5	3.0
9. Korea, Democratic Rep. of	34.2	1.0	53.9	0.6
10. Germany	35.8	1.0	33.8	0.4

자료: ADB

# I. 경제 개황 및 특징

## 1-6. 수출 구조: 요소집약도별

	2000년	2010년	변동폭 (2000→2010)
비연료 일차상품	45.93%	44.14%	-1.79%p
<b>연료 일차상품</b>	<b>6.04%</b>	<b>41.42%</b>	<b>35.39%p</b>
노동집약·자원집약 제조업품	45.58%	13.46%	-32.12%p
<b>가죽, 직물, 의류, 신발</b>	<b>42.07%</b>	<b>10.26%</b>	<b>-31.80%p</b>
장난감과 스포츠 장비	0.02%	0.00%	-0.02%p
<b>목재와 종이제품</b>	<b>2.18%</b>	<b>0.60%</b>	<b>-1.58%p</b>
<b>비금속 광물제품</b>	<b>1.31%</b>	<b>2.59%</b>	<b>1.28%p</b>
저위 기술·자본·규모 집약 제조업품	0.07%	0.04%	-0.03%p
철과 강철	0.01%	0.01%	0.00%p
인조금속제품	0.02%	0.01%	-0.01%p
단순수송장비	0.00%	0.01%	0.01%p
위생설비	0.01%	0.00%	-0.01%p
배와 보트	0.02%	0.01%	-0.02%p
중위 기술·자본·규모 집약 제조업품	0.72%	0.19%	-0.53%p
고무와 플라스틱제품	0.04%	0.08%	0.04%p
비전기 기계류	0.12%	0.04%	-0.09%p
전기 기계(반도체 제외)	0.55%	0.07%	-0.48%p
도로용 차량	0.00%	0.00%	0.00%p
고위 기술·자본·규모 집약 제조업품	0.79%	0.52%	-0.27%p
화학 및 제약 제품	0.19%	0.09%	-0.10%p
컴퓨터와 사무용장비	0.07%	0.01%	-0.06%p
통신장비 및 반도체	0.47%	0.05%	-0.41%p
항공기	0.01%	0.00%	-0.01%p
과학기구, 시계, 사진장비	0.05%	0.36%	0.31%p
기타	0.87%	0.23%	-0.64%p
총계	100.00%	100.00%	0.00%p

자료: UN Comtrade Data를 토대로 Mirror Statistics 방식으로 필자 작성.



# I. 경제 개황 및 특징

## 1-7. 수입 구조: 요소집약도별

	2000년	2010년	변동폭 (2000→2010)	
<b>비연료 일차상품</b>	<b>12.49%</b>	<b>14.96%</b>	<b>2.47%p</b>	
<b>연료 일차상품</b>	<b>14.85%</b>	<b>12.16%</b>	<b>-2.69%p</b>	
노동집약·자원집약 제조업품	18.52%	14.58%	-3.94%p	
	<b>가죽, 직물, 의류, 신발</b>	<b>13.94%</b>	<b>-4.49%p</b>	
	장난감과 스포츠 장비	0.33%	0.15%	-0.17%p
	목재와 종이제품	2.15%	1.75%	-0.40%p
	<b>비금속 광물제품</b>	<b>2.11%</b>	<b>3.23%</b>	<b>1.12%p</b>
저위 기술·자본·규모 집약 제조업품	11.53%	15.05%	3.52%p	
	<b>철과 강철</b>	<b>5.68%</b>	<b>1.77%p</b>	
	인조금속제품	2.99%	3.44%	0.46%p
	<b>단순수송장비</b>	<b>0.79%</b>	<b>3.47%</b>	<b>2.68%p</b>
	위생설비	0.43%	0.41%	-0.02%p
	<b>배와 보트</b>	<b>1.64%</b>	<b>0.27%</b>	<b>-1.37%p</b>
중위 기술·자본·규모 집약 제조업품	22.81%	25.58%	2.77%p	
	고무와 플라스틱제품	2.55%	2.40%	-0.15%p
	비전기 기계류	14.40%	14.95%	0.55%p
	전기 기계(반도체 제외)	3.66%	3.51%	-0.15%p
	<b>도로용 차량</b>	<b>2.20%</b>	<b>4.72%</b>	<b>2.53%p</b>
고위 기술·자본·규모 집약 제조업품	17.43%	15.76%	-1.67%p	
	<b>화학 및 제약 제품</b>	<b>11.41%</b>	<b>9.99%</b>	<b>-1.42%p</b>
	컴퓨터와 사무용장비	1.00%	1.08%	0.08%p
	통신장비 및 반도체	3.00%	2.60%	-0.40%p
	항공기	0.62%	0.78%	0.16%p
	과학기구, 시계, 사진장비	1.41%	1.31%	-0.10%p
기타	2.37%	1.91%	-0.45%p	
총계	100.00%	100.00%	0.00%p	

자료: UN Comtrade Data를 토대로 Mirror Statistics 방식으로 필자 작성.

# I. 경제 개황 및 특징

## 2. ASEAN(미얀마 가입)의 FTA 체결 현황(2011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ASEAN FTA	2005년 7월 발효	2010년 1월까지 관세철폐		2012년까지 관세 20%이하로		2018년까지 관세 0~5%로								
한·ASEAN FTA	2007년 6월 발효		2010년 1월까지 관세철폐		2012년까지 관세 20%이하로		2016년까지 관세 0~5%로							
일·ASEAN FTA	2008년 12월 발효		2018년까지 관세철폐		2018년까지 관세 0~5%로									
인·ASEAN FTA					2010년 1월 발효		2013년 말까지 관세철폐		2016년 말까지 관세 0~5%로					
호주NZ·ASEAN FTA					2010년 1월 발효		- 단계적으로 관세철폐 ① 2020년까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② 2023년까지: 라오스							
ASEAN자유무역지대 ⇒ASEAN 경제공동체 (2015)	2007년 1월까지 전체 80% 관세철폐		2010년 1월까지 관세철폐 (주요 6개국)		2010년 1월까지 전체 80% 철폐(베트남) 2012년 1월까지 전체 80% 철폐(미얀마, 라오스)		2015년 까지 관세철폐 (CLMV 4개국)							

주: 노란색 배경은 일반 품목, 흰색 배경은 민감품목을 의미함.

자료: 정재완. 2012. 동남아 시장 이해.

# I. 경제 개황 및 특징

## 3. 경제 특징

### ◆ 경제 특징

- 식민지 지배에 따른 영국식 시장경제 경험
- 신경제정책(1988년) 이후 형식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추구
- 군사독재와 인권탄압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와 고립화
- 핵심업종(12개 업종)은 국유기업 차지
  - ✓ 최근 민간기업 활동 다소 활발: 목재가공, 건설, 도소매, 노동집약적 경공업, 서비스업 등
  - ✓ 대규모 민영화 추진(2010년): 정유소, 조선소 등

### ◆ 농업 중심이고 제조업은 초보 단계, 최근 자원개발 활발

### ◆ 국경무역 활발: 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 ◆ 성장잠재력 높음

- 미개발 천연자원 풍부: 에너지 및 광물자원, 농림수산자원 등
- 저임 양질의 노동력 풍부
- 인구 6,100만에 달하는 내수시장

### ◆ 신정부 구성(2011. 4) 이후 개혁·개방 본격 추진

# II. 신정부의 주요 개혁·개방 정책

## 1. 신정부의 주요 경제 개혁·개방 추진 내용

분야	시기	주요 내용
경제개발 및 산업 육성	2011. 1 6 8 9	- 경제특구(SEZ)법 제정 - SEZ 지정: Dawei, <b>Thilawa, Kyaukphyu</b> ※ Muse와 Myawaddy도 개발할 듯 - Industrial Development Committee 출범 - Myitsone 프로젝트 중단 발표
대외무역	2011. 7 8 9 11	- 수출에 적용되는 상업세 인하(8%→5%) - 무역위원회 폐지 - 노후 자동차 폐기 및 자동차 수입규제 일부 완화 - 수출보증금 제도 폐지 시사
금융 및 외환	2011. 9 10 2012. 2 3 4	- 은행금리 자유화: 예금은 10~12%, 대출은 15% 이내 - 6개 민간은행에 대한 달러계좌 개설과 외화환전 허용 - 중앙은행에서 시장환율 고시 - 양곤과 만달레이 공항 및 각 은행 본점에 환전소 설치 - 3대 국영은행(MFTB, MICB, MEB) 해외지점 개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 환전 완화: 미얀마 국민은 1일 최고 1만 달러 가능, 초과할 경우 자금출처증명서 제출 (기준은 2,000달러). 외국인은 1일 2,000달러 가능(기준은 500달러) - 은행법 개정 시사: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등 - 변동환율제 도입
투자 환경	2011. 9 11 2012. 1 4	- 투자위원회(MIC) 개편 - 노동조직법 제정 ⇒ 발효는 2012년 3월 9일 - 외화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외국인투자법 개정 중: 4/30 현재 의회 통과, 대통령 심의후 조만간 공포 예정 - 전기산업부 장관, 중국에 전기(100MW)를 buyback하겠다고 제안
민영화	2012. 3	- 민영화위원회, 2015/16년까지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발표
경제전반	2011. 10 2012. 3 ?	- IMF 시찰단(World Bank와 ADB 포함) 방문 - 통신사업 면허 4개를 국내외 투자자에게 개방할 것 시사 (휴대폰 사용자 5년 안에 3,300만 명으로 확대 전망) - <b>교육/테크</b> 분야 외자진출 허용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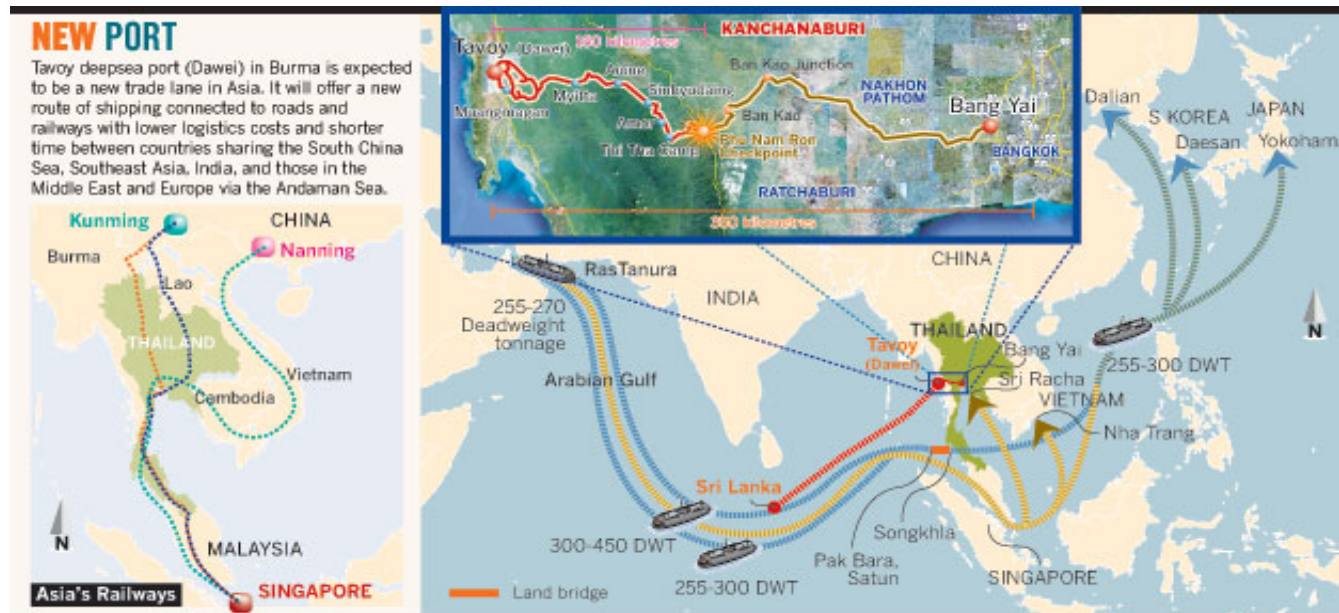
## ※ 기존 외국인투자법(1988)과 투자법 개정안 및 경제특구법(2011) 비교

내용	외국인투자법(1988)	외국인투자법 개정안(2012)	경제특구법(2011)
토지 임대	- 개인소유토지 임대불가능  - 기본 30년+5년+5년 연장 가능	- 개인소유토지 임대가능  - 기본 30년+15년+15년 연장 가능	- 기본 30년+30년+15년 연장 가능 (대규모 투자 기준)
소득세 면제	- 개업 후 3년간 소득세 면제 인정. 업무상 이익이 1년 이상 재투자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치  - 미얀마에서 생산, 수출할 경우, 수출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한 감세(한도 50%)	- 개업 후 5년간 소득세 면제  - 미얀마에서 생산, 수출할 경우, 수출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한 감세(한도 50%) 유지	- 첫 5년간 소득세 면제, 두 번째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신청 가능. 세 번째 5년간 이익 재투자 시 이익에서 기존 수입세율의 50% 감면신청 가능  - 미얀마에서 생산, 수출할 경우 첫 5년간 수출액의 수입세(Income Tax) 면제 가능. 두 번째 5년간 정해진 수입세 30%의 절반만 부과  - 수출품에 대한 상업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 가능
투자형태 및 외환송금	- 현지 파트너 없이 단독법인 설립 가능  - 합작투자의 경우 외국지분은 최소 35%	- 현지파트너 없이 단독법인 설립 가능 유지(주정부와의 합작투자 내용 구체화됨)  - 합작투자의 경우 외국지분은 최소 35%로 현행법 유지	- 상품의 생산과 사업의 운영 기간 내에는 중앙조직에 의해서 결정된 통화에 따라 평가하고 지불할 수 있음  - 투자자 외화로 경제특구 내 또는 해외로 환전 및 송금할 수 있음

자료: 오윤아·박나리. 2012. 4. 미얀마의 개혁개방 경과와 전망.

## ※ Dawei항 개발 사례

- ▶ 미얀마 Dawei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동남아 지역의 물류 및 산업 분야 일대 변화 예상.
  - Dawei 지역은 미얀마 남동쪽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개발로 인해 장기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과 남아시아,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까지 잇는 신행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 태국 최대 건설사인 ITD가 미얀마 항만청과 60년 기한 BOT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2010. 11. 2), 10년 동안 86억 달러(1단계)가 순조롭게 투자된다면 인도차이나 최대 산업공단이 될 것으로 예상.
  - 1) Deep sea port 건설(13.7억 달러), 2) 중공업(철강, 석유화학, 조선소, 비료, 발전소, 생수 등) 위주의 산업단지개발(24.1억 달러), 3) 태국-미얀마 국경 도로(170km, 8차선), 철도, 파이프라인 건설(33.9억 달러), 4) 주거 및 상업지구 개발(1.37억 달러)로 나뉘며, 2011년부터 국경지대 연결사업이 시작될 예정.
  - 투자자로는 태국 최대 에너지 기업 PTT, 태국전력공사(EGAT), 말레이시아 최대 에너지기업 Petronas, 일본의 Nippon Steel이 참여할 예정.
  - 특히 산업 공단의 경우 태국의 1, 2위 공단인 램차방과 마타푹 지역을 합친 것 보다 커 인도차이나 반도 최대 규모의 항만 및 산업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KIEP 내부 자료)



Source: Drewry, AWR Lloyd's analysis/The Landbridge Project study sponsored by Dubai World  
 /LCC freight rates are based on World Scale historical average for 2003 to 2007 and actual market dem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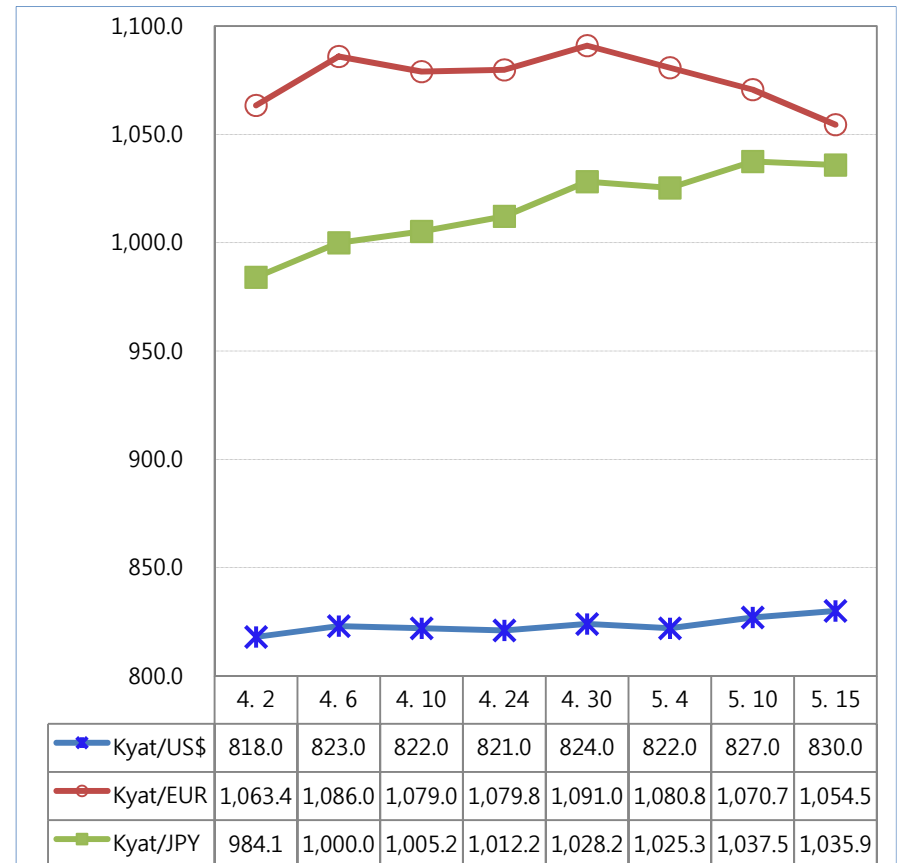
NATION GRAPHICS

자료: Nation; 정재완. 2010. 미얀마 신정부 수립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 전망.

## II. 신정부의 주요 개혁·개방 정책

### 2-1.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주요 내용

- 지난 4월 1일부터 고정환율제 폐지하고 관리변동환율제(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도입.
  - ✓ 환율제도 변경은 신정부의 경제제도 현대화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35년 동안 고정환율제 아래 존재했던 복잡한 환율시스템을 통합하고 국제자본거래와 해외송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시.
- 관리변동환율제는 미얀마 중앙은행(CBM)이 주관하는 은행간 경매시장(interbank auction)과 정해진 환율변동폭(trading band)에 의해 운영.
  - ✓ CBM은 ① 은행간 경매시장에서 제시된 환율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치 설정 ② 외환시장에서의 수급, 외환보유고와 국제시세 등을 감안한 환율 설정 ③  $\pm 0.8\%$ 의 밴드 적용 등의 과정을 거쳐 차트(Kyat)화의 기준환율(reference rate)을 결정하고 고시.
  - ✓ 첫 영업일인 4월 2일 CBM이 고시한 짜트화의 대(對)달러 기준환율은 818.0이었으며, 그 후 현재까지는 818.0 ~ 830.0을 유지함.



자료: 미얀마 중앙은행.

자료: 정재완·박나리. 2012. 4. 미얀마의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 의미와 시사점

# II. 신정부의 주요 개혁·개방 정책

## 2-2.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배경

- 그동안 미얀마는 공식적으로는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식환율, 정부공인환율, 시장환율 등 복잡한 환율구조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다중환율구조(multi-layered exchange rate regime)는 경제발전엔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
  - ✓ 미얀마의 공식환율은 1977년 IMF의 특별인출권(SDR)에 따라 1달러당 6.4차트로 고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아 실제 시장에서의 차트화 가치를 반영하지 못함.
  - ✓ 특히 미얀마에서는 공식환율과 더불어 암시장에서 사용되는 시장환율(market rate), 수입품 가격 산정과 수입관세 및 상업세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공인환율, FEC(foreign exchange certificate) 환율 등이 사용.
  - ✓ 기존의 환율제도는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심각한 차이로 인해 미얀마 경제 전반에 왜곡현상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미얀마 경제에 대한 많은 불신을 가중시켰음.
- 특히 CBM과 재정세입부(MFR)는 2011년 8월 이후 IMF와 36년 만에 금융 및 환율정책을 조율하고 협의.
  - ✓ 2011년 말부터는 IMF 대표단을 초청하여 환율제도 개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짐.



## II. 신정부의 주요 개혁·개방 정책

### 2-3.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의미와 평가

-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은 신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외환제도 개혁, 특히 환율단일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개혁조치의 일환.
-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으로 미얀마의 금융 및 외환개혁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 이번 조치는 외국인투자법상의 공식환율 적용규정 삭제, 회사법상의 최저자본금 규정 개정, 수입세 및 상업세(commercial tax) 평가액 산정기준 변경 등을 동반하고 있는바, 미얀마의 투자환경이 급격하게 개선되는 것 의미.
-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은 전격적으로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준환율을 시장환율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환율단일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아웅산수찌(Daw Aung San Suu Kyi) 여사가 참여한 보궐선거와 함께 미얀마 신정부의 최대 개혁조치로 평가.
- 이번 조치는 또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제재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특히 4월 1일은 수찌 여사가 참여하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날이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
  - ✓ 이번 관리변동환율제 도입은 미얀마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시그널이며, 특히 복잡한 환율구조를 단일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 Ⅱ. 신정부의 주요 개혁·개방 정책

### 2-4.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영향

- 복잡한 다중환율구조는 과실송금 제한과 함께 미얀마에 대한 수출입과 투자의 최대 장애요인이었다는 점에서 미얀마와의 수출입이나 투자진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 ✓ 투자나 수출입에 적용되던 공식환율과 정부공인환율이 실제 화폐가치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기업들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진출이나 수출입을 꺼리는 경향이 많았음
- 미얀마에 대한 자금유입 확대와 미얀마 내 부정부패 축소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
  - ✓ Sanction 완화에 따라 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반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이 활발해지고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ODA 지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미얀마는 경상수지 적자 등 단기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 ✓ 또한 다중환율구조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부정부패 요인을 없앨 수도 있음
- 부정적인 영향 :
  - ✓ 환율 현실화에 의해 대외무역(특히 수입)과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거시경제의 안정성 훼손 가능성
  - ✓ 그동안 공식환율을 적용받아 안정적인 이익을 누리온 미얀마 국영기업과 국가기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경영악화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 전반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 ✓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원리금 상환문제도 미얀마 정부에 또 다른 부담
- 중앙은행을 통해 결정된 기준환율이 시장환율에 근접하고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고, 그동안 공적 부문에서만 공식환율을 적용하였을 뿐 대다수는 시장환율을 적용하였기에 환율제 변경에 따른 혼란이나 영향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적을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

자료: 정재완·박나리, 2012. 4. 미얀마의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 의미와 시사점

## II. 신정부의 주요 개혁·개방 정책

### 3. '5개년 개발계획'과 '빈곤감축 및 농촌개발계획' 추진

Fourth Short Term Five-Year Economic Plan	
기 간	2011/2012 ~ 2015/2016
주요 목표	농촌지역 개발을 통한 빈곤감축과 균형적인 지역발전 및 국가 사회개발 추진
세부 목표	농업생산 확대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경제개발 촉진,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자원의 근대화, 국내외 투자유치, 신재생 자원사용 촉진, MDGs 달성, 2015년까지 ASEAN 경제공동체(AEC) 목표 충족, 거시경제 기반 강화 등
Sectoral Plan	농업, 축수산, 임업과 환경보전, 에너지, 광업,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전력, 건설업, 수송, 통신, 무역, investment and finance, 사회 및 행정분야, 서비스
Poverty Alleviation and Rural Development	
8대 중점 개발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horizontal and vertical)</li> <li>② the development of livestock breeding and fisheries</li> <li>③ the development of rural small-scale productivity</li> <li>④ the development of micro saving and credit associations(micro-finance system)</li> <li>⑤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tasks</li> <li>⑥ the development of socio-economy in rural areas</li> <li>⑦ the development of rural energy</li> <li>⑧ environmental conservation</li> </ul>

자료: 필자 작성

# Ⅲ.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주요국 동향

## 1-1. 對미얀마 경제제재 주요 내용: 미국

<p>[수정된 해외원조에 관한 법안 (1961년) 중 제489조]</p> <p><input type="checkbox"/> 미얀마는 미 국무부에 의해 "주요 불법마약류 생산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해외원조 수급이 금지됨</p>
<p>[항정신성물질거래법안/관세 및 거래법 (1990년)]</p> <p><input type="checkbox"/> 아래의 무역제재는 상기 마약류 생산국 지정과 관련됨</p> <p>(1) 미얀마 제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비롯한 특별 관세혜택 불허</p> <p>(2) 증가세 기준 5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미얀마 제품에 대해 추가적 관세율을 적용</p> <p>(3) 증가세 기준 5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본래 무관세였던 미얀마 제품 중 하나 이상에 추가 관세 적용</p> <p>(4) 다음의 두 가지 조치 가운데 최소 하나를 실행: i)미국과 미얀마 간 항공운송 대폭 감축, ii) 미국과 미얀마 간 관세의 사전승인을 위해 맺은 협정으로부터 미국의 인력 및 자원을 철수</p>
<p>[대통령령 제13047호(1997년 5월 20일)]</p> <p><input type="checkbox"/> 미국의 국민 및 기업에 의한 미얀마에서의 새로운 투자를 법적으로 금지</p> <p><input type="checkbox"/> 새로운 투자란 미얀마 국내자원개발에 관한 미얀마정부 및 비정부기구와의 여하한 계약, 양자간 프로젝트에서 일정한 지분획득, 미얀마 국내자원개발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이익 및 사용료에 관한 계약 등을 포함</p>
<p>[The Foreign Operations, Export Financing,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1997] 은 [Title 1 of the Omnibus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1997] 로 합쳐짐.</p>
<p>[미얀마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법안(2003년 7월 28일)]</p> <p><input type="checkbox"/> 본 법안이 입안된 후 30일 내로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의 일부 제품들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수입 금지는 갱신되지 않을 경우 1년 내로 폐지)</p> <p><input type="checkbox"/>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 정부의 고위직을 맡고 있는 개인 및 미얀마 정부의 미국 내 자금 및 자산을 동결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미국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의 대(對)미얀마 금융지원을 반대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미얀마 전·현직 고위인사의 미국 방문 및 비자발급 거부 권리를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p>
<p>[대통령령 제13310호(2003년 7월 28일)]</p> <p><input type="checkbox"/> 상기 법안의 실행을 위해 제정하며, 대통령령 부속서 및 재무부에 의해 미얀마정부의 고위인사로 지목된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권 행사를 차단</p> <p><input type="checkbox"/> 요주의 인물 및 이들이 소유·통제하거나 이들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단체를 지목할 권리를 재무부에 부여</p> <p><input type="checkbox"/> 미국 국민이 미얀마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미얀마로 금융서비스를 수출·재수출하는 것을 금지</p> <p><input type="checkbox"/> 미국 국민 및 기업이 외국의 주체의 미얀마 투자를 승인, 보조, 지원하는 것을 금지</p> <p><input type="checkbox"/> 제3국 기업의 이익이 상당부분 미얀마 자원개발에서 비롯된 경우 미국 국민이 이들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p>
<p>[대통령령 제13448호(2007년 10월 19일)]</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및 부패에 연루된 미얀마 인사는 물론 이들과 미얀마 정부를 물질적,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재무부 차원의 재제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p>
<p>[대통령령 제13464호(2008년 4월 30일)]</p> <p><input type="checkbox"/> 미얀마의 보석 및 원목 관련 회사가 미국 내에 보유한 자산의 동결</p> <p><input type="checkbox"/> 미국 기업이 다음의 미얀마국영기업과 하는 여하한 사업을 금지: 미얀마진주공사, 미얀마보석공사, 미얀마원목공사</p>
<p>[버마산 비취 금지에 관한 Tom Lantos법안(2008년 7월 29일)]</p> <p><input type="checkbox"/> 미얀마에서 채취한 비취와 루비 및 이들 보석이 함유된 여하한 보석류의 수입을 금지</p> <p><input type="checkbox"/> 비취 및 루비 수출업자들은 수출품목에 미얀마에서 들어온 보석류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대통령은 미얀마문제에 관한 정책자문특별대표를 지명함</p> <p><input type="checkbox"/> 국무부는 미얀마정부에 무기 및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와 단체, 미얀마 고위 인사의 자산을 관리하는 국가 및 해외은행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본 법안은 향후 미얀마 정부가 정치개혁에 실패하는 경우, Chevron을 비롯한 미국 기업이 참여 중인 미얀마 Yadana 천연가스개발 프로젝트에서 투자자들이 점진적으로 투자회수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는 의회 차원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권고</p>

# Ⅲ.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주요국 동향

## 1-2. 對미얀마 제재 주요 내용: EU

영역	제재 내용과 배경	시작연도
무기와 관련된 제품 수출 금지	(1) 무기수출 금지 (2)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수출 금지 (3) 내부 억압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수출 금지	1988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한 분야에 대한 원조 금지	(1) 미얀마 중앙 정부를 통한 개발 원조 금지 <a href="#">(2004년 완화)</a> (2) 미얀마 지방 '민간' 정부와 협력 금지 <a href="#">(2004년 해제)</a>	1988
일반특혜관세 적용 금지	미얀마에서 강제 노동 사용 수준이 매우 높음	1997
비자 금지	내 용: 군부 인사, 그들과 관련된 친인척, 기업가들을 열거하고 그들의 유럽연합 내 입국 금지 비적용: ASEM 회의나 UN 회의에 참석하는 군사정부 관리들에 대해 예외	-
자산 동결	내 용: 비자금지 목록에 있는 사람들의 자산 동결 비적용: 군부가 통제하는 정부와 소속 기업들의 자산에 대한 동결 비적용	-
투자 금지	내 용: 상당수의 국가 소유 기업들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투자 금지 비적용: 목재, 광산, 석유, 천연가스 부문 기업들은 제외됨 배 경: 2003년에 아웅 산 수지를 암살하려는 군부의 시도에 의해 70여명이 사망한 데파잉 학살 (Depayin Massacre)에 대한 대응 강 화: 2008년에 목재, 보석, 광산 부문 기업들을 포함하였으나 여전히 석유, 천연가스, 댐 부문 기업들은 제외됨	2004
목재, 보석, 금속에 대한 수입과 투자 금지	배 경: 목재, 보석, 금속 부문은 군부 인사들의 중요한 수입원임. 어려움: 이들 제품에 대해 미얀마 원산지를 증명하기 어려움	2008.4

자료: Burma Campaign UK(2010. 9), 재인용: 강대창(2011).

# Ⅲ.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주요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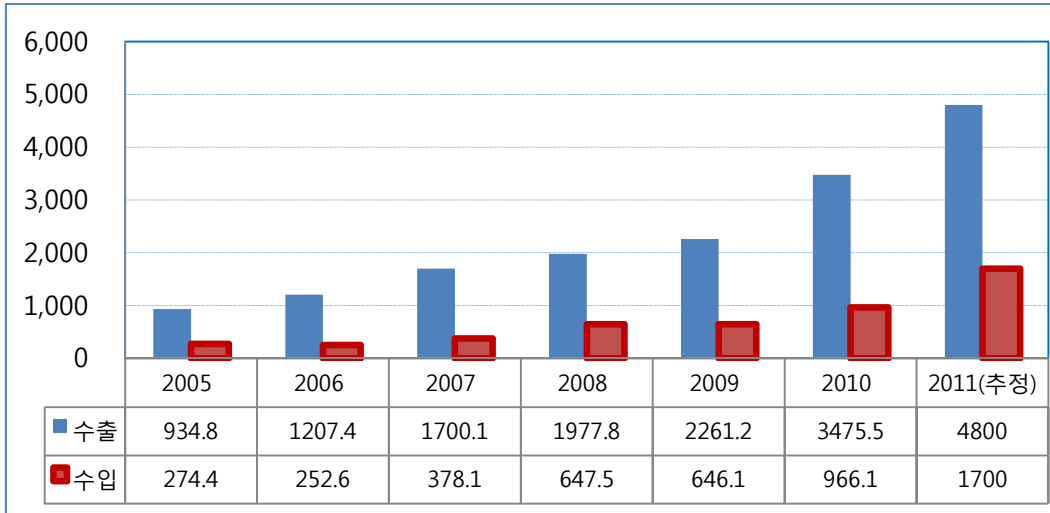
## 2. 국제사회의 對미얀마 제재 완화 및 해제 움직임

국가/기구	시 기	주요 완화 내지 해제 내용	
미 국	2011. 11 2012. 1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린턴 국무장관 미얀마 방문(56년 만에 최초 방문)</li> <li>- 제재 주도한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 Mitch McConnell 미얀마 방문</li> <li>- 인신매매방지법(TVPA)에 근거해 국제금융기관(IMF, WB, ADB etc)의 미얀마 지원 일부 허용 (기술적 지원성격의 자금지원 허용)</li> <li>-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재에 대한 부분 해제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① 경제제재 일부 완화, ② 대사파견 재개 등 외교관계 정상화, ③ 미국국제개발처(USAID) 사무소 개설, ④ 미국 NGO의 활동 용인, ⑤ 미얀마 정부 고관에 대한 미국입국비자 발급 등을 4월 중에 허용할 뜻을 밝힘.</li> <li>o NGO의 미얀마에 대한 인도지원, 민주화지원, 교육, 스포츠, 보건분야의 원조 등의 활동과 미국 금융 서비스 제공 허가 발표(미국 재무성, 2012. 4. 17)</li> </ul> </li> </ul>	
E U	2004 2011. 4 2011. 8 2012.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얀마 중앙정부를 통한 개발원조 금지 완화</li> <li>- 미얀마 지방 '민간정부'와 협력금지 해제</li> <li>- 외무장관을 포함한 24명의 미얀마 민간관료에 대한 비자발급금지과 자산동결조치 1년 유예, EU 출신 고위인사의 미얀마 방문금지 해제</li> <li>- Shell, 미얀마 재진출 계획 발표</li> <li>- EU 개발위원회 집행위원 미얀마 방문 및 1억 5,000만 유로 지원계획(2012~2013년) 발표</li> <li>- EU각료이사회, 미얀마 고위관료에 대한 비자발급정지 해제 발표</li> <li>- 캐머런 영국 총리, 영국 총리로서는 1948년 이후 최초 방문 (신정부 구성이후 미얀마를 방문하는 최초의 서방국가 총리)</li> <li>- 무기수출 금지를 제외한 제재를 1년 유예한다는 the Common Position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4월 23일 EU 외교장관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개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對미얀마 투자 금지, 자산 동결, 광물·목재·금속 등에 대한 수입 금지 등을 모두 포함.</li> <li>o 4월 28일, 양곤에 EU 대표사무소 개설</li> </ul> </li> </ul>	
국제 기구	World Bank	2012. 4	- 6월에 미얀마 사무소 개설 계획 발표(4. 26) ⇒ 새로운 지원프로그램 수립할 듯
	IMF	2011. 8 2011. 10 201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얀마 정부와 금융·환율정책 조율 및 기술 지원( ~ 2012. 4)</li> <li>- 시찰단 2차례 방문(2011. 10 &amp; 2012. 1)</li> <li>- 미얀마에 대한 최초의 연차보고서 발표: Myanmar 2011 Article IV Consultation</li> </ul>
	ADB	2012. 3	- 미얀마 경제의 재건 및 부흥 수요 측정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할 전문가 파견 고려중

# Ⅲ.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주요국 동향

## 3. 중국의 對미얀마 경제협력 강화

<중국의 對미얀마 수출입 현황(UNComtrade & 중국)>  
(백만 달러)



<중국의 동남아 수력발전프로젝트 참여현황>  
(2011)

국명	완공	건설 중	제안	총계
미얀마	5	42	10	57
캄보디아		8	3	11
라오스	2	13	4	19
베트남	3	3		6
말레이시아	1	10	7	18
동남아 총계	14	79	26	122

자료: International Rivers

중국의 주요 전략	주요 관련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부대개발 활성화</li> <li>➢ 자원 확보 및 시장 개척</li> <li>➢ 인도양 접근로 확보</li> <li>➢ 고립된 미얀마 지원</li> <li>➢ 경제교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얀마의 수출 3위, 수입 1위, FDI 1위,</li> <li>✓ 천연가스 및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차욱푸~운남성 쿤밍) ~ <b>충칭 &amp; 난닝</b></li> <li>✓ 차욱푸 심해항 건설</li> <li>✓ 차욱푸 경제특구(중국기업 전용) 건설</li> <li>✓ 중·미얀마 고속철도 건설(차욱푸~운남성 대리, 2011. 5. 31 MOU)</li> <li>✓ 중·미얀마 고속도로 건설(만달레이~라쇼~무세)</li> <li>✓ 띵라와 경제특구 건설</li> <li>✓ 만달레이 &amp; 네빠도 공항 건설 지원</li> <li>✓ 파이프라인 건설지역에 병원과 학교 20개 지원계획 발표(2012. 3)</li> </ul>

자료: 필자 작성

## ※ 미얀마에 투자진출한 주요 중국 기업 리스트

분 야	회사명
수력전기 분야	Sinohydro China Gezhouba Group Co., CGGC Yunnan Power Grid Co. Farsighted Investment Group Gold Water Resources Co. Yunnan Joint Power Development Co. Yunnan Huaneng Lancang River Hydropower Co. Yunnan Machinery & Equipment Import & Export Co., YMEC China Power Investment Co., CPI China International Trust & Investment Co., CITIC China National Electric Equipment Co., CNEEC China National Heavy Machinery Co., CHMC Hunan Savoo Oversea Water & Electric Engineering Co. Guangdong New Technology Import Export Zhuhai Co. China Export Import Bank
원유 및 천연가스 분야	Sinopec China National Petroleum Co. (CNPC) PetroChina China Huanqiu Contracting & Engineering Co. (Sino-Singaporean consortium)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 China National Oil & Gas Exploration & Development Co., CNODC China Oilfield Services Ltd.
채광업	China National Heavy Machinery Co., CHMC China Nonferrous Metal Mining Co. Kingbao/Jinbao Mining Ltd. Zijin Mining Co. Jiangsu Pengfei Group Co. Northern Star Co. Sea Sun Star Co. Standing Company Limited

자료: 건흥리서치(2012. 3)



# Ⅲ.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주요국 동향

## 4. 일본 정부와 기업

구분/일정	주요 내용
일·미얀마 정상회담(20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 경제협력기본방침 발표</li> <li>➢ Thilawa Master Plan에 대한 MOI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과 배후 지역(2,400ha)을 경제특구와 Smart City로 개발할 예정</li> <li>✓ 마루베니, 쓰미토모, 소지쯔, 日本工營이 참가한 합작사 설립 예정. 미쓰비시 商社도 참가 고려</li> <li>✓ JBIC 자금을 통하여 2012년 MP, 2015년 일부 완성 예정(METI 지원 사업이며, MP는 JICA의 양곤 인근 대규모 인프라 정비계획과 연동).</li> </ul> </li> <li>➢ 자연배상금(1,761억 엔)과 2003년 4월 이후 변제기일 도래한 채무(원리금 포함 1,274억 엔) 탕감</li> <li>➢ 2003년 3월 말 이전 변제일 도래한 채무(원리금 합계 1,898억 엔)를 Program Loan으로 재공여</li> </ul>
제4차 일·메콩 정상회담(20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전략 2012 채택: 3대 핵심협력분야 설정 및 3년간(2013~2015) 6,000억 엔 지원 약속</li> </ul>
201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억 엔의 무상자금 공여 발표: 홍수피해 복구, 건설 기계 및 농기계 구입</li> <li>➢ 양곤에서 일본기업제품 전시회 최초 개최</li> <li>➢ '일본·미얀마 협회' 설립 약속 (일본측은 '미얀마·일본 협회' 2011년 12월 설립)</li> <li>➢ 다이와종합연구소·NTT데이터·후지쯔, JICA로부터 미얀마 금융시스템 근대화사업 수주</li> </ul>
20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증권거래소와 다이와증권그룹, 미얀마 증권거래소 및 자본시장 육성 지원키로 미얀마 정부와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얀마 중앙은행과 5월 MOU 체결 예정</li> <li>✓ 2015년까지 주식시장 개설 준비</li> </ul> </li> </ul>
최근 진출 발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루베니, 외자업계 최초로 네삐도 출장소 개소(2012. 1)</li> <li>➢ 미쓰이물산, 네삐도에 사무소 개설(2012. 5)</li> <li>➢ 다이소, 양곤 쇼핑센터에 프랜차이즈 오픈(2012. 3)</li> <li>➢ 타이요 생명보험사, 양곤에 주재원사무소 개설 계획 발표(2012. 4)</li> <li>➢ NTT Data, 미얀마에 자회사 설립예정 발표(2012. 4)</li> </ul>

자료: 필자 작성

# Ⅲ.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주요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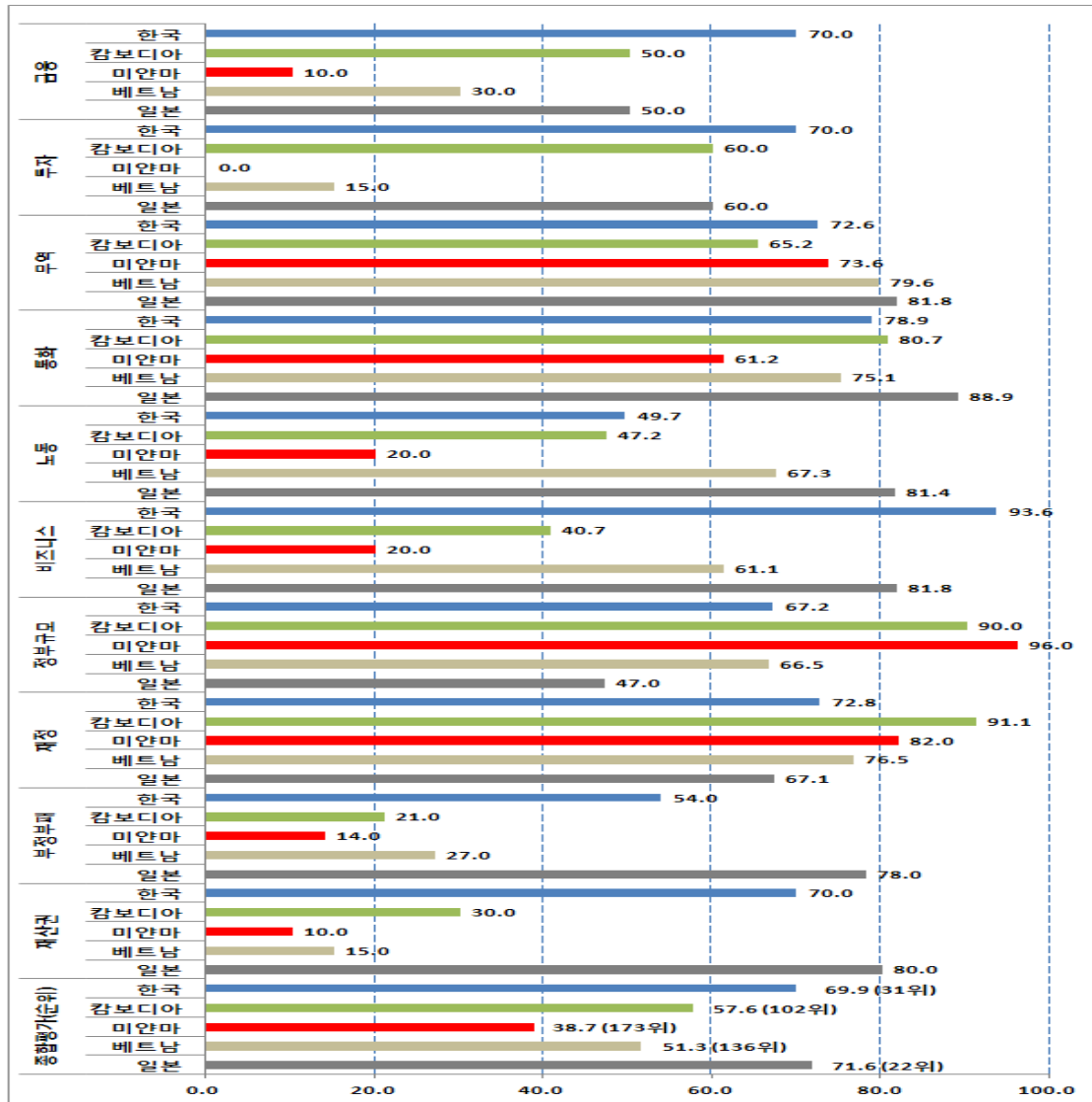
## 5. 동남아 주요국과 인도

국 가	주요 내용
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2위국(61건, 96억 달러): 전력 81.7%, 제조업 8.3%</li> <li>➢ 교역 29억 달러: 1위 수출대상국이자 2위 수입대상국</li> <li>➢ 주요 진출기업: 전력(ITD, Ratch 전력공사), 석유 및 가스(PTTEP), 방직 및 의류(Hong Seng Group, Nice Group), 금융업(Krung Thai Bank Public, Siam Commercial Bank) 등</li> <li>➢ Myawaddy 국경검문소 재개(2011. 12)</li> <li>➢ 최근 관심분야: 에너지 자원, 시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 식품(일본계 식품업체), 관광 및 호텔 등</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얀마의 제3위 수입대상국이자: 장비, 전기제품, 건축재료, 철강재료 등 수입</li> <li>➢ 투자 6위국: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 호텔 및 관광 등의 분야에 72건, 18억 달러 투자</li> <li>➢ 주요 진출기업: Singapore Airlines, Silver Wave Energy, BFI Holdings, Brilliant Oil Corporation, Unog</li> <li>➢ 미얀마 4개 은행 외화거래업무 허가(2011. 12)</li> <li>➢ 싱가포르와 미얀마 기술협력계획 양해각서 체결(2012. 1 30): 경제발전, 인재양성, 공공관리 및 행정 등 3개 분야에서 미얀마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운영계획</li> </ul>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7위국: 석유, 가스, 부동산, 호텔 등에 39건, 9.8억 달러 투자</li> <li>➢ 미얀마 4개 은행의 말레이시아에서의 외환거래업무 허가(2011. 12)</li> <li>➢ 90명의 말레이시아기업인 미얀마 방문 및 협력 모색(2012. 2)</li> </ul>
인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얀마의 5위 교역대상국: 10.7억 달러(2010 회계연도), 수출의 90%가 농산물</li> <li>➢ 1994년 1월 국경무역협정 체결: Moreh-Tamu, Zowkhatar-Rhi</li> <li>➢ 석유와 천연가스(ONGC, Essar, GAIL, Jubilant), 자동차(Tata Motors), 전력(NHPC) 등에 투자</li> <li>➢ Sittwe 심해항 프로젝트: 미얀마-인도 경제협력프로젝트</li> </ul>

자료: 필자 작성

# IV. 외국인투자환경과 변화 전망

## 1. 경제자유도지수 비교(2012)



자료: Heritage Foundation and Wall Street Journal, 재인용: 정재완. 2012. 한국과 미얀마 관계

# IV. 외국인투자환경과 변화 전망

## 2. 미얀마와 주요국 도시의 근로자 평균임금 비교(2010. 8, 일본기업)

항 목		달러 기준									비 고
		호치민	양 곤	프놈펜	방 곡	자카르타	마닐라	뉴델리	칼라룸루프	싱가포르	
제조업	1. 종업원 (일반직공) ① 기본급(월급) ② 연간부담액	① 114 ② 1,891	① 41 ② 629	① 101 ② 1,504	① 263 ② 5,125	① 186 ② 3,247	① 236 ② 3,897	① 294 ② 4,331	① 298 ② 5,615	① 1,252 ② 22,206	1. 정규고용, 경험 3년정도 종업원 2. 정규고용, 전문 대/대학 졸업 후 실무경험 5년 정도 3. 정규고용, 대학 졸업 후 실무경험 10년 이상 4. 정규고용, 실무 경험 3년 정도 5. 정규고용, 대학 졸업 후 실무경험 10년 이상 1~5의 ②: 기본급, 수당, 사회보장, 잔업, 보너스 등 모두 포함
	2. 엔지니어 (중견기술자) ① 기본급(월급) ② 연간부담액	① 265 ② 4,574	① 95 ② 1,406	① 363 ② 4,830	① 588 ② 9,778	① 357 ② 6,082	① 388 ② 6,841	① 681 ② 10,242	① 878 ② 14,827	① 2,239 ② 37,266	
	3. 매니저(과장급) ① 기본급(월급) ② 연간부담액	① 641 ② 10,283	① 238 ② 5,480	① 416 ② 5,396	① 1,423 ② 23,769	① 854 ② 14,303	① 1,012 ② 17,218	① 2,343 ② 25,998	① 1,684 ② 27,587	① 3,710 ② 58,827	
비제조업	4. 스태프(일반직) ① 기본급(월급) ② 연간부담액	① 379 ② 5,638	① 179 ② 2,643	① 225 ② 3,797	① 576 ② 9,806	① 307 ② 5,333	① 394 ② 5,737	① 528 ② 8,844	① 872 ② 14,460	① 1,942 ② 30,835	
	5. 매니저(과장급) ① 기본급(월급) ② 연간부담액	① 946 ② 14,456	① 445 ② 6,278	① 1,035 ② 16,019	① 1,492 ② 24,508	① 1,021 ② 16,023	① 1,060 ② 16,387	① 1,537 ② 24,792	① 1,964 ② 32,483	① 3,786 ② 59,206	
6. (고정+변동) 보너스 (개월분)		1.69	1.11	1.91	2.71	1.94	1.95	1.39	1.98	2.26	
7. 법정최저임금 (개정일)		79.49/월 (2011.1.1)	없음	55/월 (2010.10.1)	7.05/일 (2011.1.1)	142/월 (2011.1.1)	7.15/일 (2011.1.15)	117~142/월 (2010.2.1)	도입 예정	없음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1).

# IV. 외국인투자환경과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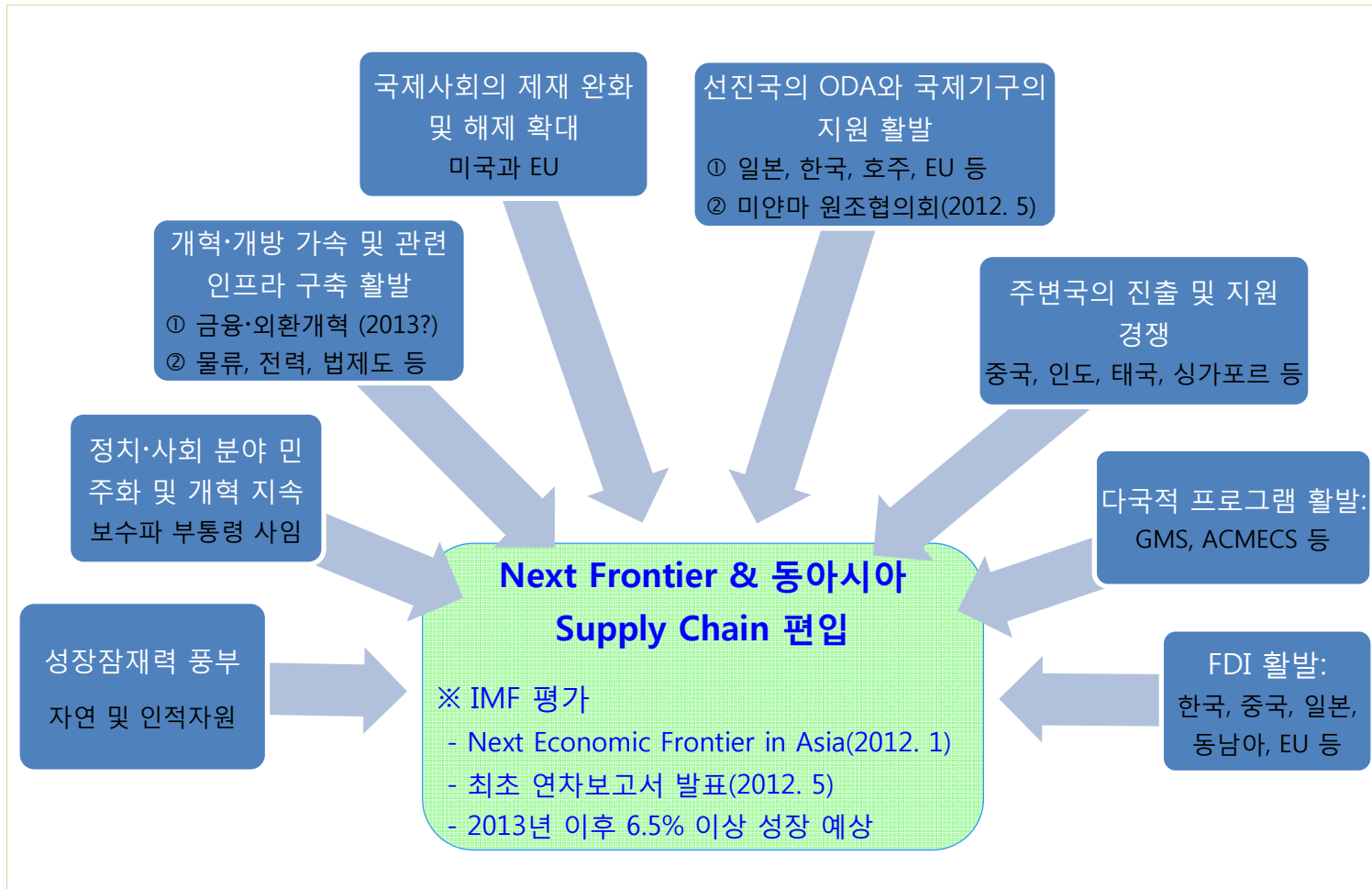
## 3. 미얀마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trengths)	기회(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경제성장정책 지속</li> <li>- 초기개도국으로 개발수요 풍부</li> <li>- 미개발 자원 풍부: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자원, 티크 등 삼림자원, 보석, 수자원, 광물과 희토류 등</li> <li>- 농림수산 자원 개발 잠재력 풍부</li> <li>- 내수시장 확대 가능성(인구 6,100만 이상)</li> <li>- 저임노동력: 식자율 90%, 국민의 90%가 불교도</li> <li>- 치안 및 영어소통 능력 양호</li> <li>- 녹색성장 잠재력 풍부</li> <li>- 전략적 요충지: 배후에 30억 인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정부의 적극적인 개혁·개방 추진 특히 2013년 SEA Games 개최 및 2014년 ASEAN 의장국 수임</li> <li>- 대규모 개발 및 민영화 추진</li> <li>-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완화(EU, 미국, 호주 등)에 따른 투자 및 ODA 지원 확대</li> <li>- 남아시아의 Next Frontier 시장에 대한 선점 가능</li> <li>- 거대시장 중국과 인도 진출 교두보</li> <li>- ASEAN의 FTA 추진 활발 및 경제통합 심화(AEC)</li> <li>- 메콩강 유역 개발 및 동아시아 역내개발 격차 해소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풍부</li> <li>- 한류 열풍 및 친한 기류 지속</li> </ul>
약점(Weaknesses)	위협(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과 제도 미비 및 불투명성</li> <li>- 수송, 통신, 전력 등 SOC 부족</li> <li>- 전후방 연관산업 및 금융 인프라 취약</li> <li>- 시장경제체제 및 개발경험 부족</li> <li>- 부정부패 만연</li> <li>- 기술인력 부족</li> <li>- 외화부족에 따른 외환통제 지속</li> <li>- 상업세 등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사회적 불안요인 상존</li> <li>-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국제 금융기관의 경제제재 조치 지속: 달러송금 제한과 금융환경 미비</li> <li>- 중국과 인도의 영향력 확대</li> <li>- 경제제재 완화와 개혁·개방을 틈탄 다국적기업 및 경쟁국의 투자진출 러시</li> <li>- 투자진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 및 국내 NGO의 반대 여론</li> </ul>

자료: 정재완 외(「메콩강 유역국(Indochina)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포럼 운영 및 전략보고서 작성, 2011)를 토대로 재작성.

# IV. 외국인투자환경과 변화 전망

## 4. 미얀마의 발전 전망





감사합니다